

##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7885
----------	-------

제안연월일 : 2026. 3.

제안자 : 교육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 가. 상정경과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심사경과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053호	진선미의원	2024.8.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4.9.2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 회부</li> <li>○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2024.11.26) 상정</li> </ul>
	제3345호	김대식의원	2024.8.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2024.11.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 회부</li> <li>○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2024.11.26) 상정</li> </ul>

나.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6.2.26.)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다.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6.3.10.)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의 진로교육에 대해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의 장은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진로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 교육부장관은 진로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국가진로교육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교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등을 수행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설치·운영 또는 지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진로체험 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현재 전국에 200개가 넘는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하지만 진로체험지원센터는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 내 진로교육 지원 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대학의 진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학이 지역사회의 산업체, 공공기관 등과 연계·협력하기 위한 대학 내 진로교육 협의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도진로교육센터로 변경하며,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해 시·군·구에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시·군·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기관 간 역할체계 및 연계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시·군·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진로교육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진로교육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에 안 제16조에 따른 시·도진로교육센터 및 안 제16조의2에 따른 시·군·구진로체험지원센터와 연계·협력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제10호 및 제16조의2 신설 등).



##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로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대학의 장은 대학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지방 자치단체, 공공기관, 지역사회 단체 및 산업체 등이 참여하는 대학 내 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16조에 따른 시·도진로교육센터 및 제16조의2에 따른 시·군·구진로체험지원센터와의 연계·협력

제16조의 제목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도진로교육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실정에”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실정에”로, “지역진로교육센터를”을 “시·도진로교육센터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진로교육센터의”를 “시·도진로교육센터의”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시·군·구진로체험지원센터) ①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시·도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시·군·구

의 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진로체험 운영·지원 등을 수행하는 시·군·구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군·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를 “시·도의”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진로교육센터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역진로교육센터는 이 법에 따른 시·도진로교육센터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3 중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도진로교육센터”로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대학의 진로교육) ① · ② (생 략) <u>&lt;신 설&gt;</u></p>	<p>제14조(대학의 진로교육)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대학의 장은 대학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역사회 단체 및 산업체 등이 참여하는 대학내 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u></p>
<p>제15조(국가진로교육센터) ① (생 략) ② 국가진로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9. (생 략) <u>&lt;신 설&gt;</u>  10. (생 략) ③ (생 략)</p>	<p>제15조(국가진로교육센터)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9. (현행과 같음) 10. <u>제16조에 따른 시·도진로교육센터 및 제16조의2에 따른 시·군·구진로체험지원센터와의 연계·협력</u>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p>
<p>제16조(<u>지역진로교육센터</u>) ① 교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u>지역실정에</u>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진로교육 콘텐츠</p>	<p>제16조(<u>시·도진로교육센터</u>) ① ----- -----<u>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실정에</u>-----</p>



제22조(진로교육 콘텐츠) ① (생략)

② 교육부장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청, 교육관련 연구소 등이 진로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진로교육 콘텐츠)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의-----  
-----  
-----  
-----.